

미혼1세 축복후보자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(만 20세 이상)

기준일 : 2026.08.14. | 협회 가정행복국

순	제출 서류		심사기준	비고
1	입회원서		접수일자 기준으로 입교한지 6개월 이상	
2	축복후보자 신청서		목회자소견서와 자기소개서(5줄 이상) 상세히 작성	후보자, 목회자 자필작성 및 서명
3	축복결혼행사 참여 서약서 및 축복헌금 환불관련 서약서		본인 서명란 기입 (양식 하나로 통합) 믿음의 부모 서명 필요	
4*	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		※ 가족관계증명서: '상세' 본인 명의 발급 ※ 혼인관계증명서는 '상세'로 첨부	유효기간 12개월
5	축복헌금 납부		'행정지원센터 하나로' 가상계좌로 입금	
6	예배 및 십일조 생활 (※ 전산 입력일 기준이므로 월말에 예배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그 달 내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)		※ 예 배: 6개월 연속 기준, 월 2회 이상 ※ 십일조: 6개월 연속 기준, 월 1회 유지 (십일조 월1회 이상 입력사항 시스템인식불가)	교구 상신일 기준 3개월
7	3일 금식 또는 9일 조식 금식		목회자 확인 후 '하나로'에 날짜 입력	
8	축복전 40일 정성		개인정성으로 진행	
9	후보자 이수 교육	참부모론 및 원리교육 20강좌 이상 ① 참부모론 입문 10강 ② 참부모론 6강 +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6강 + 창조원리 중심 강의 등 10강 이상 ※ 대면 교육으로 진행	① 교구/교회주관 ② 청평 40일수련 ③ 미래인재국 주관 수련 (강좌 확인 후 인정)	유효기간 3년 ※ 정식구 레벨1 유지시 유효기간 없음
		참부모님 생애노정 8강좌	① 교구주관 8강좌 (교회주관: 교구문의 후 진행) ② 청평 40일 수련 ③ 미래인재국 주관 수련 (강좌 확인 후 인정)	
		축복 교육	① 교구주관 ② 교구상담지: '가정행복국 이메일' 송부	
10	건강진단서 (B형간염검사, 에이즈검사 포함)		① 필수검사항목: 신체계측, 소변검사, 흉부X선, 혈액검사, 에이즈(HIV), 간기능(B형간염) ② B형간염검사 (항원/항체 포함) : 항체가 없는 경우 - 접종 후 확인증 첨부	유효기간 12개월 (전 연령) ※ 금주, 금연 확인
11*	소득 증빙 자료	① 회사원: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 (입사 1년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부) ②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) ③ 농·축·수·임업종사자: 출하증명서 혹은 소득유무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(예: 통장거래내역) ④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(영수증)	※ 국제축복을 희망하는 후보자는 법무부 결혼 이민(F-6)비자 발급 요건 강화로 비자신청일로부터 지난 1년간 일정기준 이상 소득증명 필요 ※ 찾기쉬운 생활법령 www.easylaw.go.kr 참고 (홈→생활법령→검색창에 '결혼에 따른 체류자격' 검색) ※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: 국세청 홈텍스 발급가능 www.hometax.go.kr ※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, 납부 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://www.nhis.or.kr/	유효기간 12개월
12	최종학력증명서, 재학증명서(재학생일 경우)		고졸미만의 학력 소지자는 상대 확정시 협회 상신 가능	유효기간 12개월
13	사 진 - 상반신 1매, 전신 1매(국제축복희망자)		※ 넥타이, 정장, 구두 착용 정자세 기준	[규격 : 가로20cm, 세로25cm] ※ 파일용량 300~500dpi
※ 한-한 확정의 경우 4(가족관계증명서,혼인관계증명서), 11(소득증빙자료), 12(최종학력증명서), 쌍방향의서 제출로 대체 가능하며 상호합의 후 반드시 양측의 서명 날인 해야 함. 단 국제축복 확정의 경우 쌍방향의서 불가, 13(사진)번 항목은 국제축복 후보자만 준비				